

2026년 제2차

부산대학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

부산대학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초기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하오니,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의 지원 바랍니다.

2026년 9월 21일

부산대학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장

1 모집 개요

- 위치: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(금정구 장전동) 내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공간
- 모집규모: 8개실
- 서류접수: 2026. 9. 21.(월) ~ 10. 6.(화) 14시까지(기한 엄수)
- 모집대상
 -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¹⁾
※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
 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32조에 의거 기술 기반 창업이며, 입주 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²⁾
 - 창업보육센터 내 보육 공간으로 본사 이전이 가능한 자
 - 입주 제외 대상
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³⁾
 - 소음, 진동, 폐수, 매연, 위험물질 등 공해 유발업종 및 기업
 - 국세·지방세 체납자 및 금융기관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및 기업
 - 기타 센터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및 기업
 - 창업보육센터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 5[별표1]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교육 연구시설 건물이므로 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 및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, 식품유통전문판매업, 출판 및 인쇄업 영업허가 불가

1)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기업은 개인사업자 최초 창업일 기준으로 3년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
2) 추후 연구 개발 특구의 미승인시 입주 승인 취소될 수 있음

3) 일반유희주점업, 무도유희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,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

□ 모집 우대 사항 (관련 증빙 첨부)

-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
-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유망 선진기술 기업
-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기업, 지식재산권 확보 기업
- 본 대학과 산학협력 실적이 있는 기업(창업중심대학 선정기업, 교원창업 등) 등
- 장애인기업, 여성 창업기업
- 부산대학교 학생창업동아리 출신 기업

2 모집 공간

번호	건물	면적 (㎡)	연구출연분담 금(임대료) *VAT별도	보증금	공공 요금	행정 분담금 *VAT별도	국유재산 사용료
			1~3년차4)				
1	삼성산학 협동관	48	㎡당 8,500원	연구출연분담금 (임대료) 1년치 금액	개별호실 전기 실사용료 별도부과 /月	월 10,000원 /호실	부과 대상 ※입주시 상세 설명
2		26.4					2026년 해당사항 없음5)
3	효원산학 협동관	29.7					
4		33.66(2)					
5		48.53(2)					
6		49.55					

- 보육실은 본사 사무공간에 적합하며, 소음 및 악취를 유발하는 경우 입주 제한됨
(보육실 내 실험 불가)
- 입주 심사 평가 후 평가 결과·사무실 상주 인원 등 공간 활용도에 따라 공간
배정 및 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
- 입주 이후에는 매년 연장심사(경영성과 평가) 후 1년 단위로 계약연장 진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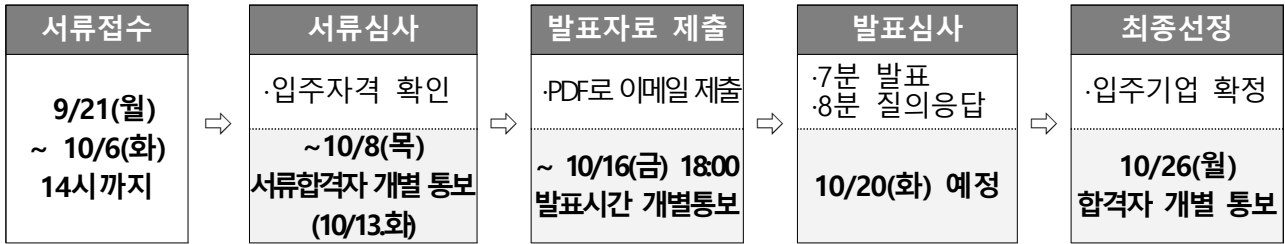
3 입주시 지원사항

- 창업 관련 행정지원, 정보제공, 전문 교육 지원
- 학내 창업지원사업 연계 마케팅, 투융자 프로그램, 창업지원 인프라 지원
- 각종 인허가(벤처, ISO 인증 등), 지식재산권 취득, 전시회 참가 등 지원
- 보육실 당 인터넷 회선 제공, 학내 시설(공동실험실습관 등) 이용 지원

4) 입주 1~3년차: ㎡당 8,500원, 입주 4~5년차: ㎡당 9,400원, 입주 6년차 이상: ㎡당 10,000원

5) 2027년 3월부터 효원산학협동관 국유재산사용료 납부 대상

4 모집절차 및 일정(안)



※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

5 심사방법 및 제출 서류

□ [1차] 서류심사

· 제출방법

- 창업보육센터 업무 이메일(pnubi@pusan.ac.kr)로 아래의 서류 스캔본 제출

번호	서류명	비고
1	(붙임1) 입주신청서 1부	필수
2	(붙임2)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	필수
3	(붙임3) 신용정보제공조회동의서 1부	필수
4	(붙임4) 신규입주심사판정결과 승낙서약서 1부	필수
5	대표자 법정신분증 사본 1부	필수
6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	필수(법인의 경우, 법인 명의)
7	7-1. 사업자 등록 사실여부 사실증명원 1부	필수(예비창업자)
	7-2. 총사업자 등록내역 사실 증명원 1부	필수(기창업자, 과거창업이력 있는 경우)
8	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필수(예비창업자 제외)
9	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	필수(예비창업자 제외)
10	근로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	필수(예비창업자 제외)
11	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각 1부	해당시(법인사업자만 해당)
12	각종 성과 증빙	해당시

※ 공동대표의 경우, 5-7번 서류 각 1부씩 제출

※ 제출 증빙은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행본만 인정되며,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.

※ 예비창업자(사업자등록 전)인 경우에는 8-11번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예비창업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.

□ [2차] 발표심사

- 발표대상: 서류 심사 합격자(개별 통보 예정)
- 제출자료: 사업계획서 내용이 담긴 발표 자료(PDF 파일로 제출)
- 제출방법: 창업보육센터 업무 이메일(pnubi@pusan.ac.kr)로 발표자료 제출
- 발표자료 제출기한: 2026. 10. 16.(금) 18:00까지 제출
- 심사일정: 2026. 10. 20.(화) 예정 (발표 시간은 서류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, 발표자료 제출 역순으로 발표시간 배정)

6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마감기한 전까지 모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정상 접수처리
-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재사항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
- 연구개발특구법에 의거, 입주 선정 후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서비스에 기업이 별도로 직접 승인을 받아야 함
- 입주 심사 평가 후 적격 기업이 없는 경우, 모집정원 미달 선발 또는 미선정할 수 있음(신청 접수현황, 평가내용 및 신청자별 배점결과는 공개하지 않음)
- 입주 대상자의 승인 취소로 인한 차순위자 선발할 수 있음
- 사무실 가구 및 집기는 기업에서 별도 구비 해야 하며, 전화는 필요시 기업에서 별도 설치 필요(교내 LG U+ 사용 중)
- 입주 신청자는 공고문 등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하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입주 승인 이후, 신청자(기업 대표자) 변경 불가

7 문의처

□ 부산대학교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

- 주 소: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, 부산대학교 효원산학협동관 202호
- 홈페이지: <http://bi.pusan.ac.kr>
- 이 메 일: pnubi@pusan.ac.kr
- 전 화: (051) 510-1357